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김 봉 철**·박 종 호***

차 례

- I. 서 설
- II. 인도 회사법의 CSR 법제화 과정과 주요 내용
 - 1. CSR 법제화의 배경과 과정
 - 2. CSR 의무조항과 시행령의 내용
- III. CSR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비판
 - 1. CSR 법제화에 대한 인도 기업의 비판적 반응
 - 2. 법제화 시행 이후 인도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과 문제점
- IV.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 1. 효율성 제고 방안
 - 2. 형평성 제고 방안
- V. 결 어

* 이 글은 201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접수일자 : 2017. 10. 31. / 심사일자 : 2017. 11. 22. / 게재확정일자 : 2017. 11. 24.

I. 서 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용어는, 국내외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상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¹⁾ 이것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²⁾ 그러나 CSR에 관한 최근 논의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 즉 법적인 의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³⁾

미국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는 뉴욕타임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⁴⁾ 그는 ‘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왜 기업이 양로원을 만들고, 병원을 건설하고, 복지관을 지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부가 세금을 받고 있으니 국가의 책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CSR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으나,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⁵⁾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CSR 개념을 법적 의무로 구현하려는 논의에서 출발하여,⁶⁾ 다국적 기업들에게

- 1) 이 개념은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논리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의와 개념의 확대가 있었다[장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85-91쪽]. 한편, CSR은 규제의 측면에서 ‘기업의 불법 혹은 탈법에 대하여 책임의 면탈을 방지하고 엄격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전재경, “환경법상 기업의 책임”. 「법제연구」 제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04쪽].
- 2) 최성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사법”. 「법제연구」 제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31쪽.
- 3) CSR 개념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박애적 책임’, ‘윤리적 책임’이라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법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Archie Carro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38(2),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and society, 2006, p. 494-505]. 따라서 CSR 개념 중에서 ‘법적 책임’ 유형과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CSR을 법적 의무로 강제화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이다.
- 4)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9. 13.
- 5) Andrew Crane,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6.

일정한 CSR 활동을 강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준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⁷⁾ 한국 법학분야에서도 1970년대부터 CSR 개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⁸⁾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구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인도의 새로운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이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지배구조 개선, 규제 축소 및 자유화, 공시 및 회계제도 강화, 실효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기존 1956년 회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개정 회사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CSR 활동의 보고 및 지출을 강제한 제135조이다. CSR에 관한 인도의 선구적인 회사법 시도에 대해서, 한국의 연구들은 주로 그 소개나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⁹⁾ 따라서 이 제도에 관한 인도사회 내부적인 배경과 최근 현황에 관한 조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에 도입된 CSR 활동의 의무화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인도에서 CSR 의무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실제 활동 결과들을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틀에서 이 제도의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인도처럼 CSR 활동을 강제하는 입법을 논의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환경이 아직 미숙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사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 6) 미국 및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진 CSR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Olufemi Ama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and the Law: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1]을 참고할 것.
- 7) Jennifer Ann Zerk, *Multinational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mitation and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310.
- 8) 당시 한국의 논의들은 선진국들의 개념을 소개하며 상법체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제안과 이 제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주된 것이었다[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5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40쪽].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도 회사법을 통한 CSR 강제화 사례가 없었던 만큼 기존의 연구들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제안이 많았다[곽관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경영법률학회, 2017, 227쪽].
- 9) In-Soo Han and HariPriya Gundimeda, “The Poverty Reduction in India and The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of Korean Companies”,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19(2), Institute of Ind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3, p. 185-224.

II. 인도 회사법의 CSR 법제화 과정과 주요 내용

1. CSR 법제화의 배경과 과정

인도에서 CSR의 입법화 논의는 2009년 회사법¹⁰⁾ 개정안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2009년 회사법 개정 초안에서는 CSR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2009년에 발간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 2009)’에서 언급되면서, 2010년 10월 처음으로 인도 의회 내에서 CSR 의무화가 논의되었다.¹¹⁾ 이후 2011년 회사법 개정안(Companies Bill No. 121)에 CSR 의무조항이 명시되었고, 이 내용은 2012년 12월 18일 인도 하원(Lok Sabha)과 2013년 8월 8일 상원(Rajya Sabha)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으로 관보에 공포되었다. 입법과정이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사회가 기업에게 CSR을 강제할 수 있는가는 기업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가나 자본주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까지 연장될 수 있다. CSR이란 기업이라는 사회구성원이 자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는 의무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개념¹²⁾과 유사하다. 선의의 도움을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윤리와 법이 접목된 것인데, 인도 회사법 개정을 통한 CSR의 강제화도 이러한 논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회사법의 CSR의 강제조항이 의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도사회의 특수한 배경이 있다.

10) 인도에서 회사법의 용어와 법리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보통법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인도기업법의 실무와 이론이 의회입법인 1932년 인도조합법(Indian Partnership Act, 1932)과 1956년 인도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1956)이라는 제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전과 상법전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또는 대륙법적 전통과 유사한 면도 있다[정희찬,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한국법학원, 2012, 75쪽].

11) 고재중, “ISO 26000 국내 법제 도입 방안과 사회적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3, 227쪽.

12) 이종민,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도움의 손길에 대한 경제학적 함의”,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1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4, 94쪽.

우선 인도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박애주의 기부사상이 CSR의 강제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인도는 힌두교 등 종교적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이 존재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이러한 종교관에 근거하여 사찰건립 또는 기근 및 질병으로부터 구호 목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활동이 많았는데,¹³⁾ 이후 기업이 사회적 약자에 기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기업들이 신탁사상(Trusteeship)¹⁴⁾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여, 사회개발과 개혁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다. 당시 기업들은 주로 교육기관을 건립하거나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였다. 간디와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도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도 인도 국민회의가 농촌, 빈곤층, 사회적 약자의 지지로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바탕이기도 하다.¹⁵⁾

인도 개정 회사법에 CSR 의무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정부의 예산압박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인도 정부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해 복지에 할당된 지출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경제침체 등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강행해야만 했다. 결국 인도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CSR 활동을 법률로 강제하여 기업의 자금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인도 기업들은 2014년 총선으로 친기업적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와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집권하면 CSR 의무화 조항이 삭제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⁶⁾ 그러나 기업들의 예상과 달리 모디 총리는 ‘한 가족 한 주택 실현’이라는 목

13) 고재중, 앞의 연구보고서, 221쪽.

14) 인도에서 신탁사상이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재산)중에서 최소한을 제외한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탁(trust)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고재중, 앞의 연구보고서, 222쪽].

15) CSR 법제화 이전의 배경과 사례는 [김용식·전채택, “인도 CSR 활동의 변화와 특성 연구-다국적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인도학회, 2010, 39-49쪽]을 참고할 것.

16) 미디어 SR, ‘인도 CSR 법제화 그 이후 - 모디정부의 선택은’, 2015. 1. 19.

표를 위해서 “기업들이 빈민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CSR 활동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¹⁷⁾ 모디 총리의 리더십과 집권당의 공조로 반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결국 개정된 회사법이 발효되었다.

2. CSR 의무조항과 시행령의 내용

인도의 개정 회사법 제135조에 명시된 CSR 의무화 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인도의 회사가 법령에 명시된 범위에서 사회적 기여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3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회사법 제135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회계연도 순자산이 500 crore 이상이거나 총매출 1000 crore 이상 또는 순이익 5 crore 이상인 회사는 독립이사 1인 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very company having net worth of rupees five hundred crore or more, or turnover of rupees one thousand crore or more or a net profit of rupees five crore or more during any financial year shall constitute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of the Board consisting of three or more directors, out of which at least one director shall be an independent director.)
- (2) 제134조 (1)에 따른 이사회 의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원회 의 구성을 공시해야 한다. (The Board's report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134 shall disclose the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17) 이후 정부는 기업들의 도로안전운행 홍보, 운전교육 지도관 파견, 법률 및 의료지원, 지방개발, 빈곤층 주민에 대한 무료점심 제공도 CSR 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CSR 법 제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위 기사 참고].

18) Caroline Van Zile, “India’s Mandato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posal: Creative Capitalism Meets Creative Regulation in the Global Market”,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13(2),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at University of Hawaii, 2012, p. 271-275.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한다.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shall,)
- (a) 별표 VII에서 규정된 것으로 회사가 실행하는 활동을 나타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을 들거나 이사회에 권고 하는 것 (formulate and recommend to the Board,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which shall indicate the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company as specified in Schedule VII;)
 - (b) (a)와 관련된 활동에 드는 비용의 총액을 권고하는 것 (recommend the amount of expenditure to be incurred on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clause (a); and)
 - (c) 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을 실시간 감독하는 것 (monit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of the company from time to time.)
- (4) (1)에서 언급한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한다. (The Board of every compan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후 회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을 승인하고, 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의 내용을 공시하며, 가능한 한 규정된 방식으로 회사의 웹사이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의 내용을 올려놓는 것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approv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for the company and disclose contents of such Policy in its report and also place it on the company's website, if any,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and)
 - (b) 회사의 기업사회적책임정책에 포함된 활동이 회사에 의해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것 (ensure that the activities as are includ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of the company are undertaken by the company.)
- (5) (1)와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

의 수행을 위해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순이익의 2%를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The Board of every compan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ensure that the company spends, in every financial year, at least two percent. of the average net profits of the company made during the thre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s, in pursuance of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이사회는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운용되는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들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법정 금액을 지출하도록 한다. (Provided that the company shall give preference to the local area and areas around it where it operates, for spending the amount earmark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이사회는 회사가 법정 금액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제134조 (3)(o)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지출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Provided further that if the company fails to spend such amount, the Board shall, in its report made under clause (o) of sub-section (3) of section 134, specify the reasons for not spending the amount.)

회사법 개정과 함께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2014년 2월 제135조에 관한 시행령(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을 마련하여 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였다.¹⁹⁾ 시행령은 전체 9조로 구성되었으며, 개정 회사법 제135조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확정하였다. 시행령은 CSR 의무화와 CSR 공시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 시행령은 2014년 2월 제정된 이후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2014년 9월과 2016년 5월에 일부 사항만 추가되었다. 추가사항은

19) 여기서 ‘시행령’이라고 번역한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 는 개정 회사법 제135조에 관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항의 의도와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보충하였다.

① 외부의 전문가와 기관을 통한 CSR 활동에 행정 및 간접관리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2014년 9월),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외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자선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활동하면서 의무적인 CSR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유사한 활동으로 3년간의 확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구절을 포함(2016년 5월)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개정 회사법 제135조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해당조항	내 용	비 고
제1조	회사법 제135조의 순수익 2%를 CSR 정책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2013년 인도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함 (Policy of the company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policy will cover subjects enumerated in Schedule VII ²⁰ of the act.)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CSR을 수행해야 함
제4조 (4항)	CSR 활동은 인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함 (the CSR projects or programs or activities undertaken in India only shall amount to CSR expenditure.)	외국에서 수행하는 CSR은 불인정
제4조 (6항)	회사는 CSR 프로그램을 인도에서 활동하는 신탁, 사회단체 또는 자선단체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은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관련회사에 의해 설립되지 않고, 지난 3년간 관련 CSR 관련활동을 수행해온 조직이어야 함 ²¹) (Companies may build CSR capacities of their own personnel as well as those of their implementing agencies through institutions with established track records of at least three financial years but such expenditures ²²) shall not exceed five percent, of total CSR expenditure of the company in one financial year.)	많은 기업들은 CSR 활동의 일부를 NGO의 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함 (법정 금액의 최대 5%)

20) 회사법 제135조와 관련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열거한 항목이다.

21) 2016년에는 이러한 2014년의 시행령 규정이 보완되어, 회사가 직접 또는 외부와 공동으로 회사나 자선단체 등을 설립하여 프로그램이나 자선사업을 수행하여 의무적인 CSR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수행한 3년간의 확정된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such company or trust or society shall have an

제9조	<p>CSR 규칙은 법 1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연간 이사회 보고서로 공시해야 하며 온라인 웹사이트에도 게재되어야 함²³⁾</p> <p>(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shall,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CSR committee, approve the CSR policy for the company and disclose contents of such policy in its report and the same shall be displayed on the company’s website, if any, as per the particulars specified in the Annexure.)</p>	<p>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해당 기업의 CSR 활동을 파악할 수 있음</p>
-----	--	---

개정 회사법 제135조와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의 회사들은 CSR 활동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법과 시행령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므로, 실제로는 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것이라 예상되었다. 실제로 2015-16년 회계연도에서 기업들이 보고한 결과물도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⁴⁾

III. CSR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비판

세계 최초로 ‘경제적 기여방식’을 통하여 CSR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한 인도의 회사법 개정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대정신에 입각한 혁신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자선의 영역으로 남겨 두었어야 할 영역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사회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의무와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다.²⁵⁾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사회와 공

established track record of three years in undertaking similar programs or projects”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결국 처음 CSR을 의무화할 당시 제외되었던 회사 스스로 설립한 자선단체 등의 CSR 활동도 의무활동의 범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22) 2014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 including expenditure on administrative overheads,”가 추가되었다.

23) 이사회의 연간보고서로 공시되는 정보에는 CSR 정책 및 CSR 프로젝트, 회사의 CSR 위원회 구성, 지난 3년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당기순이익, 예정된 CSR 예산, CSR 지출의 세부내역, 정해진 2% 지출에 실패하였을 때의 이유, CSR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다. 이는 시행령의 제8조과 제9조에 근거한다.

24) 미디어 SR ‘인도 CSR 의무화 이후 1년, 그 성과는?’, 2016. 8. 10.

25) 유지혜, “인도 CSR 의무화와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설명하느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설명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²⁶⁾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회사법의 CSR 법제화는 인도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도 있는데, 이러한 배경이 실제로 법제화 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1. CSR 법제화에 대한 인도 기업의 비판적 반응

회사법 개정 법안이 발표되자 인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대체로 ‘기업은 경영의 목적인 이익 추구하고 이익극대화에만 전념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업활동에 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즉 사회적 책임을 공익실현과 동의어로 이해하며, 공익의 판단을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일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기업이 CSR 활동 및 CSR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²⁷⁾ ① CSR을 수행하면 ‘사회적 비용의 기업내부화’가 진행되고 생산비용증가와 이윤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경영자가 CSR 활동에 관여하면 주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경영자 고유의 책임을 벗어난 탈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법률적 규제와 행정적 압력으로 CSR을 강요하면서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면 정경유착이나 관변기업이 출현하거나 자유주의 기업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④ 기업의 이윤극대화 추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최고도로 실현하는 원동력이므로, 기업이나 경영자가 ‘이윤극대화’에만 전념하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 인도의 Rajagiri 경영대학교의 CSR 센터 소속인 Salim 교수에 의하면, 인도기업들의 입장은 주로 ①과 ④를 근거로 한다.²⁸⁾

글로벌윈도우, 2014.

26) 데이비드 빌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 베아테 시아피엘·벤자민 J 리차드슨 편, 회사법과 지속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2015, 92쪽; 유지혜, “인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와 시사점”,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0-61쪽.

27)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한양법학」 제 29집, 한양법학회, 2010, 148쪽.

①에 관한 인도기업들의 주장은, CSR 활동이 자선적인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주장은 CSR 활동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구호나 개발과 거리가 있고, 기업과 경영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의 활동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2013년 이전 타타스틸(TATA steel)²⁹⁾을 제외하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지출하는 인도기업은 없었다.³⁰⁾

④와 관련하여, 인도 상공회의소 하리시 마리와라(Harish Mariwala) 회장은 CSR 법제화에 대해 “비효율적이며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정부(특히 주 정부)가 ‘기업의 돈으로 복지를’이라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역사회에 최적의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방해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인도의 주요 상용차 제조 기업인 TVS 그룹의 베누 스리니바산(Venu Srinivasan) 회장³²⁾은 “CSR 의무화는 새로운 형태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34%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³³⁾ 정부가 기업들의 돈으로 지역사회 구호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 확대 등으로 인한 자원확보에도

28) 위 내용은 2017년 1월 16일 코친 시 라자기리 대학교에서의 현지 인터뷰를 참고한 것임.
29) 타타그룹은 수십 년간 주식배당금의 1/3을 CSR 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타그룹의 CSR 활동에 대해서는 [곽창호, “전통이 된 타타그룹의 사회공헌활동”, 「Chindia Journal」 제30집, 포스코경영연구원, 2009, 1-2쪽]을 참고할 것.
30) Futurescope, ‘India’s Top Companies for Sustainability and CSR 2015’, 2015 Annual Report 참고.
31) Arpit Gupta, “Mandatory CSR in the Companies Bill, 2011: Are We There Yet?”, *NALSAR Student Law Review* 8, Nalsar university of law, 2013, p. 41.
32) 현 TVS 회장은 대표적인 인도 내 지한파 기업인이자, 동시에 부산시 명예시민이기도 하다.
33) 인도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루피 이상의 국내기업이 33.99%(30%+10%추가부담금+3%교육세), 그 이하인 기업은 30.9%(30%+3%교육세)를 부담한다. 외국기업은 각 43.26%(40%+5%추가부담금+3%교육세)와 41.2%(40%+3%교육세)로 국내기업보다 약 10% 정도 높다. [KOTRA 인도 국가정보 참고]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한다.³⁴⁾ 이러한 주장은 CSR 법제화가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면서도 기업의 이윤침해를 낳고, 사회적 비효율성과 중복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다.³⁵⁾

Salim 교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이고 국가 경영에서 기업들의 역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현재 인도 정부가 위의 여러 비판들에 맞서서 CSR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는 오히려 적어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예상 가능한 혼란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대처할 것이며, CSR 활동에 대한 규정을 하위규범으로 더 명확하게 하고, CSR 법제화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기업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인도 사회가 이전부터 CSR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오랜 전통이 있지만 법제화는 다른 문제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2. 법제화 이후 인도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과 문제점

인도 회사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CSR 활동이 의무화된 2015년 첫 해에 적용대상이 된 기업 중에서 460개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연간보고서들은 이 제도의 시행초기 상황을 잘 설명한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회계연도 2015년 기준 CSR 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이 법정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제조업체인 VIVO 사의 분석에 따르면, CSR 의무화에 해당하는 전체 인도기업 중 오직 18%만이 2% 지출기준에 부합했으며 이 중에서 10대기업은 없었다.³⁶⁾

34) Arpit Gupta, "Mandatory CSR in the Companies Bill, 2011: Are We There Yet?", *NALSAR Student Law Review* 8, Nalsar university of law, 2013, p. 41-42.

35) 정책의 시행시기 문제도 제기되었다. 라자기리 대학교의 Salim 교수에 따르면 회사법 개정안이 공표된 2013년에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인 인도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추가부담금을 기존 5%에서 10%로, 외국기업은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의무화된 2%의 CSR 의무화 규정은 기업들의 급격한 조세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6) Economic Times, 'Mahindra & Mahindra tops CSR list in India even as companies scale up operations', 2015. 10. 26

<표 2: 주요 기업들의 2014년 CSR 활동 보고>³⁷⁾

기업명	CSR 법정 지출 금액 ³⁸⁾	지출액	지출이행률
인도국영석유공사	660.6 crore	495 crore	75%
타타 컨설팅서비스	285 crore	219 crore	77%
오라클금융서비스	32.95 crore	11.93 crore	36%
네슬레 인디아	30.7 crore	8.51 crore	28%

인도 회사법 제135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인 2%를 지출하지 못한 기업은 보고서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인도 최대 통신업체인 Airtel은 연간보고서에서 “당사는 CSR 의무활동 적용 대상 기업이지만, 당장 이 법안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현재는 CSR 활동을 위해 당사가 집중해야 할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밝혔다. 순이익 2%를 지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보고서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실행 첫 해이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해서’, ‘적절한 에이전시를 찾지 못해서’ 등의 이유를 주장하였다.³⁹⁾

실제로 인도 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과 첸나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한국계 기업들은, 법정기준에 맞추어 CSR을 수행하는 것보다 최근의 제조업 불황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인도에서 CSR 활동은 법제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지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경영의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작용도 있다. 영국의 Guardian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수가 유착관계에 있는 NGO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NGO는 수수료를 챙긴 후 남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다시 돌려준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또한 CSR의 법제화로 인해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NGO들이 투자기업을 찾아

37) 미디어 SR, ‘인도 CSR 의무화 이후 1년, 그 성과는’, 2016. 8. 10.

38) 2017년 2월 기준으로 1루피는 약 17.7원이며, 1 crore는 천만 루피이다. 따라서 660.6 crore는 약 1168억 6천만원 정도이다.

39) 위 기사 참고.

난립하였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NGO를 찾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NGO보다는 이름이 알려지고 규모가 큰 NGO에게만 기업의 지원이 집중된다는 점도 지적된다.⁴⁰⁾

기업들이 CSR 활동에서 NGO에 의존하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점들도 있다. ① 정부가 권장하는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CSR 계획수립과는 다르게, 현실은 기업들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아니라 CSR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얼마를 쓸까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한 ② CSR 법제화에 대처할 시간/경험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얻으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필요하다. 인도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빈곤타파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강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 활동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복투자의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대기업, 제조사와 협력사, 판매기업은 대도시 인근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인접성이나 마케팅 효과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CSR 지출이 대도시 위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⁴¹⁾ 이런 경우에 CSR의 효과가 보다 간절한 지방 군소도시나 촌락, 혹은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와 부족민(Scheduled Tribe)이 사는 부락에 전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CSR의 중복활동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실제로 The Indian Express는 안드라 프라데시와 텔랑가나 주, 마하라슈트라 주같이 규모가 큰 주들에 가장 많은 CSR 지출이 이루어진 반면, 규모가 작은 주들과 다수의 연방직할지들에 사용된 CSR 활동의 총 규모가 오히려 예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CSR의 혜택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인도 동북부 지역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미조람, 나갈랜드

40) Guardian, 'Indian law requires companies to give 2% of profits to charity. Is it working?', 2016. 4. 5.

41) Adaeze Okoye, *The Legal Approach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s a Llewellyn's Law-Jobs Approach*, London:Taylor & Francis, 2016, p. 6.

드 주 등에서 지출된 CSR의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한다.⁴²⁾

최근 타밀나두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인 기업들의 CSR 활동도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실제로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ICPC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지원이 첸나이와 그 주변 마을의 구호와 복지에 집중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대도시에서 중복된 CSR 활동가능성이 있으며,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까지 자발적인 기업들의 CSR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별로 극심하게 편중된 CSR 혜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IV.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위의 문제점들은 결국 CSR 의무화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효율성 부족은 기업들이 기대만큼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CSR 활동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형평성의 문제는 주로 CSR을 NGO 또는 지역사회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거나, 그 혜택이 규모와 지역에 따라 편중된다는 사실에 있다.

1. 효율성 제고 방안

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CSR 의무화에 대한 세밀한 처벌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도 국내외의 유력한 언론들도 기업들의 CSR 활동이 생각보다 소극적인 것에 대해 처벌조항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였고, Rajagiri 대학의 Salim 교수도 인도 정부가 CSR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처벌조항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인도 기업부는 2014-15 회계연도에서 기업들의 CSR 활동비로 500억 루

42) 안드라 프라데시와 텔랑가나 주가 각 629.7 crore, 마하라슈트라가 529 crore 로 각각 지출 규모에 의한 순위 상 1~3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 순이다[Indian Expr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pend up, still short of target', 2016. 10. 26].

피(약 8,695억 원)를 예상하였으나, 이는 개정 회사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여러 매체를 통해 예상되었던 1000억 루피(약 1조 7390억 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⁴³⁾ 2015-16 회계연도에서는 CSR 활동비가 전년도의 500억 루피에서 약 28% 증가하였다. 시행 첫 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추가되어 집행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CSR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를 처벌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인도 기업들에게 CSR 활동에 대한 전통이 있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제화된 의무와는 차이가 있다. 기업들이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돈을 지출해야 하는가만 골몰한다는 비판도, 기업들이 변화된 CSR 환경에 대응하고 인도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율적인 CSR 체계로 발전시켜나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인도 정부는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기업들은 CSR 활동에 대해 정부와 협조하거나 기업들 사이에도 협조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케랄라 코친 시의 Rajagiri 경영대학 교처럼,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은 교내에 CSR 부서나 NGO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CSR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CSR 활동에 관한 강연과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전인도경제인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도 분기마다 CSR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한다.⁴⁴⁾

기업들의 전체 CSR 지출금액이 2015-16년 회계연도에서 전년도에 비해 28% 상승한 것은 기업들이 법률로 강제된 제도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CSR 활동이 개선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CSR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43) 위 기사 참고.

44) KOTRA 첸나이무역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총영사관은 타밀나두 주에 위치한 한국기업들과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CSR 포럼을 주최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있는데, 인도 정부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지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인도 정부는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기업들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편리하게 CSR 자금을 지출하면서도 국책사업에 이름을 올려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⁴⁵⁾

2% 의무지출 기준에 더하여 사용처까지 정부가 유도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히려 의무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약한 수준의 권고 조치는 사실 기업의 재량권이나 자율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업들 역시 현재까지 CSR 활동 지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은 인도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본래 CSR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CSR의 실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도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CSR 활동으로써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의문이 있었던 과거 CSR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환경, 보건 등 전 영역에서 CSR 활동이 요구되는 지역(북동부의 대다수 지역)은 CSR 법제화 이후 오히려 CSR 지출이 줄어든 지역에 해당한다.

처벌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CSR 활동을 위한 자금의 사용처를 찾는 기업들이 연방 정부가 각종 개발지수 지표에서 하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45) 예를 들면, 모디 총리가 주도한 긴급구호자금 펀드(Relief Fund)에 기부하는 것이 CSR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년도 14억 루피에 불과했던 모금액이 2015-16 회계연도에 약 57억 루피 이상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The Indian Express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7년에 중요한 발전 사업으로 시행될 Clean India나 Digital India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Indian Expr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pend up, still short of target', 2016. 10. 26].

생활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리적으로 소외된 동북부 지역이나 인도 남부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TVS가 CSR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CSR 지출을 ‘다른 모습의 세금’이라고 보는 이 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형평성 제고 방안

이 방안들이 CSR 혜택의 지역형평성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SR 지출 차이는 인도의 여러 주들 사이에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주의 CSR 지출이 적다. 물론 하나의 주 안에서도 고질적 빈곤에 시달리는 마을이 문맹률 개선과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타밀나두 주 안에서 첸나이 처럼 대규모 공장과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주민은 지리적 이점으로 CSR 의무화 이전부터 지속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나, 같은 주이지만 첸나이와 공단 주변의 마을들을 제외하면 CSR의 혜택을 받는 곳이 적다.

많은 NGO들은 NGO에 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의 CSR 예산 한도를 기존 5%에서 최고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회사법 이전부터 활발히 활동해오던 주요 NGO들은 특정 지역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마디야 프라데시, 비하르 등 내륙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러한 NGO들이 오래 활동을 수행한 경험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NGO-CSR 활동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현행법상 NGO가 한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CSR 기금은 기업 순이익의 0.1% 정도인데, CSR 의무화의 기준점인 순이익 5 crore(약 8억 5천만 원)인 기업은 NGO에 850만 원 정도를 위탁할 수 있다. 인도 사회에서 활동하는 2만 개가 넘는 NGO들이 기업으로부터 CSR 활동비로 받는 기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인도에서 NGO와 기업의 관계는 신뢰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들은 직접 CSR 재단을 설치하기도 한다.⁴⁶⁾

정부가 NGO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상한선을 10%로 늘린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NGO에 위탁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난립하는 NGO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기업의 활약이다. 통신사와 은행은 도농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CSR 활동의 주체로 손꼽힌다.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미소금융, 즉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 Finance, 혹은 Micro Credit)를 주목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유명한 그라민(Grameen) 은행과 같이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넓은 유통망의 이점을 이용하여 통신사와 은행의 기능이 결합되기도 한다.⁴⁷⁾

인도와 남아시아의 미소금융 활동이 빈민들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고리대금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도 있다.⁴⁸⁾ 빈곤층에게 25% 이상의 이율을 부과하는 고리대금업도 존재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2011년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가 고율의 이자와 강압적인 회수를 금지하는 미소금융기관(Micro finance Institution)에 대한 규제법(Andra Pradesh Micro finance Institution act)을 통과시키자,⁴⁹⁾ 관련 기업들이 650억 루피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⁵⁰⁾ 미소금융에서 ‘사업의 성공’과 ‘빈곤의 제거’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⁵¹⁾

46) 2014-15년 회계연도에 회사에서 직접 CSR 재단을 보유하는 대기업은 약 99곳이었으나, 2015-16년에는 153곳으로 증가하였다[위 기사 참고].

47) 조선 Biz ‘노벨평화상 받은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국유화 ‘논란?’, 2013. 8. 9.

48) 김종호,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10-516쪽.

49) 인도 연방정부도 2년간 15,000 루피 이상을 빌려줄 수 없으면 이율은 25% 이하, 폭력적인 회수 방법은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소금융 기관법(Micro Finance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Bill 2012)을 인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정호영, “남아시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실상 - 품위 있는 발전은 가능했는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2013, 4쪽].

50) 실제로 인도의 대표적인 미소금융 기관들은 시중은행들로부터 11~1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28~30%의 높은 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위 법적조치 이후 대부분 파산하였다[위 연구보고서, 1-2쪽].

51) 조나단 모르두흐(Jonathan Morduch)은 ‘미소금융의 분열’(Micro finance schism)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절대다수의 빈민들은 정기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소금융은 ‘자기운영에 충실한 것’과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onathan Morduch, “The Microfinance Schism”,

그러나 법제도적 자원을 잘 정비하면 미소금융은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불균등한 CSR 지출을 다소간 해소할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이율과 높은 상환율은 공존할 수 없겠으나, CSR 활동은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정부가 주민들의 상환율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라민 은행이 그룹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빈민들에게 제시한 이율은 10% 정도였다.⁵²⁾

인도의 주요 31개 미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Microfinance Institutions Network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에게 경쟁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부실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금융기관들은 자국의 개인신용평가기관인 Credit Information Bureau와 Highmark Credit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미소금융 대출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이들은 지방 빈곤층을 대상으로 50달러 이하의 소액을 지원하며, 대출신청자 1인당 3개 금융기관 이상의 대출과 총 대출규모가 5만 루피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업계 자율규정을 마련하는 등 빈민구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률은 낮지만 CSR의 실천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미소금융이 서민 및 빈민들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정부나 NGO 등과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저가형 휴대전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은행 등이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액 대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는 제안도 가능하다. 이는 현재 화폐개혁에 따른 현금유통의 불안정으로 불편함을 안고 있는 인도의 소외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⁵³⁾

World Development 28(4), Elsevier, 2000, p. 618].

52) 그라민 은행의 성공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2010년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 ‘Caught in Micro Debt’는 그라민 은행의 대출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상환율 달성을 위해서 빈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여주었다.

53) 2016년 11월 인도의 모디 총리는 고액 화폐권에 해당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신권으로 교체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신권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여 민간 경제에 타격이 지속되었다[연합뉴스, ‘인도 화폐개혁 현금부족 사태 장기화 조짐…“내년 초까지 지속’, 2016. 12. 29].

V. 결 어

인도의 CSR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며 인도 내의 고유한 문화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그러나 확장되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CSR 개념이 한국의 기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인도 사례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관심은 CSR 활동이 의무화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과 인도 내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로 집중되었고, 사회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제가 인도 사회 전반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도 회사법에 마련된 CSR 법제화가 실제로 인도 사회의 빈곤퇴치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최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회계연도에 발표된 인도 회사들의 CSR 사업 현황에서 집행한 금액과 구체적인 활동의 질이 당초 인도 정부와 사회가 기대했던 것에 크게 모자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① CSR의 법제화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② 이 법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계에서 요구하는 비판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이 순이익 2%의 CSR 지출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족하여, 현실에서 기업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모만큼의 지출을 꺼리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람에게 도움이 전해져야 하는 CSR과 개발사업의 특성상, 현행 법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 모두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많은 인도 기업들은 CSR 활동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활동에 대한 제약에 부담을 느낀다. 또한 기업들은 가능하다면 CSR 활동이라고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지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들의 인식개선과

는 별개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실현되기 위하여 기업들의 CSR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CSR의 법제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인도의 사례를 관찰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도 사회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책의 구체적인 효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CSR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CSR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도의 사례처럼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단기적인 안목에서, CSR 활동 의무화 입법논의는 사회적 영향과 문제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재종, “ISO 26000 국내 법제 도입 방안과 사회적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3
-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경영법률」 제 27권 제2호, 경영법률학회 2017
- 곽창호, “전통이 된 타타그룹의 사회공헌활동”, 「Chindia Journal」 제30집, 포스코경영연구소, 2009
- 김중호,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법학연구」 제 15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용식·전채택, “인도 CSR 활동의 변화와 특성 연구- 다국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인도학회, 2010
- 데이비드 빌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 베아테 시아 피엘·벤자민 J 리차드슨 편, 회사법과 지속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5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한양법학」 제29집, 한양법학회, 2010
- 유지혜, “인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와 시사점”,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유지혜, “인도 CSR 의무화와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윈도우, 2014
- 이종민,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도움의 손길에 대한 경제학적 함의”,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1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4

- 장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 전재경, “환경법상 기업의 책임”. 「법제연구」 제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정호영, “남아시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실상 - 품위 있는 발전은 가능했 던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MERiCs, 2013
- 정희찬,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한국법학원, 2012
- 최성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사법”. 「법제연구」 제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가정보 - 인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8561&categoryId=48561>
- 미디어 SR, 인도 CSR 법제화 그 이후 - 모디정부의 선택은?, 2015. 1. 19.
<http://srwire.co.kr/archives/11120>
- 미디어 SR, 인도 CSR 의무화 이후 1년, 그 성과는?, 2016. 8. 10.
<http://mediasr.kr/archives/22664>
- 인도 2013년 개정 회사법 전문
http://egazette.nic.in/WriteReadData/2013/E_27_2013_425.pdf
- 인도 회사법 135조에 대한 기업부 시행령 (2014년 2월)
<http://finance.bih.nic.in/documents/csr-policy.pdf>
- 연합뉴스, 인도 화폐개혁 현금부족 사태 장기화 조짐...“내년 초까지 지속”, 2016. 12.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9/0200000000AKR20161229150600077.HTML>
- 조선 Biz, 노벨평화상 받은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국유화' 논란?, 2013. 8. 0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9/2013080901274.html

In-Soo Han and Haripriya Gundimeda, “The Poverty Reduction in India and The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of Korean Companies”,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19(2), Institute of Ind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3

(외국 문헌)

Adaeze Okoye, *The Legal Approach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s a Llewellyn’s Law-Jobs Approach*, London:Taylor & Francis, 2016

Andrew Crane,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8

Archie Carro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38(2),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and society, 2006

Arpit Gupta, “Mandatory CSR in the Companies Bill, 2011: Are We There Yet?”, *NALSAR Student Law Review* 8, Nalsar university of law, 2013

Caroline Van Zile, “India’s Mandato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posal: Creative Capitalism Meets Creative Regulation in the Global Market”,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13(2),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at University of Hawaii, 2012

Jennifer Ann Zerk, *Multinational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mitation and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Jonathan Morduch, “The Microfinance Schism”, *World Development* 28(4), Elsevier, 2000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9. 13

Olufemi Ama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and the Law: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1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in India, “Policy Amendment Rule 2014”

Futurescope, India’s Top Companies for Sustainability and CSR 2015,
<https://www.futurescope.in/india-best-companies-for-csr-2015/>

Economic Times, Mahindra & Mahindra tops CSR list in India even as companies scale up operations, 2015. 10. 26.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company/corporate-trends/mahindra-mahindra-tops-csr-list-in-india-even-as-companies-scale-up-operations/articleshow/49330470.cms>

Guardian, Indian law requires companies to give 2% of profits to charity. Is it working?, 2016. 4. 5.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6/apr/05/india-csr-law-requires-companies-profits-to-charity-is-it-working>

Indian Expr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pend up, still short of target, 2016. 10. 26.
<http://indianexpress.com/article/business/business-others/corporate-social-responsibility-spend-up-still-short-of-target-3101342/>

부록

Rajagiri 대학 경영학부 Salim P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Q: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 곳 Rajagiri 대학의 경영학부의 부교수이자, 이 대학 내에 위치한 CSR 센터에서는 기업들의 CSR 전략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인도경제인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 내의 CSR 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의 한 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인도 내에서 CSR의 법제화는 기업 및 학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법제화가 야기한 부작용과 보완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A: 논란이 된 주제임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공감합니다. 시행령도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회사법 제 135조는 법령의 조항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해서 늘 비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내 법체계와 달리, 법령 자체와 그 의미하는 바가 두루뭉술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예시한 활동이 아니라도 CSR 취지에 부합되면 적법한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CSR 취지에 부합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Q: 당기 순이익의 2%를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까?

A: 대체로 그렇습니다. 처벌 조항이 기업들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기업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집권한 신정부가 집권

초에 시행령으로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법안은 집권 2기 초반에 주로 도입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CSR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고하지 않았을 시의 처벌 조항은 명확한 데 비해 CSR 활동을 못했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기업들이 열심히 CSR을 수행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기업들의 초기 CSR 활동이 여러 모로 미숙한 것도 앞의 질문과 더불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뿐만 아니라 본래 자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CSR을 강제화한 것 자체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령 기업들이 유력 NGO에 CSR 활동을 위한 자금을 위탁했다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신뢰할만한 NGO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기업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A: 모두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CSR 법제화가 시행된 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이 막 지났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인도에서 비록 CSR에 대한 전통이 깊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벌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이 NGO에게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는 아쉽습니다. 가령 대기업들은 촌락이나 부락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위생 상태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의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년 하반기 유례없었던 타밀나두 지역의 수해를 복구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첸나이 같은 큰 도시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수해 현장에 등장하는 것은 엄청난 미디어 노출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해 복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CSR 법제화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띄고 있기에, 그다지 권장할 만한 현상이 아닙니다.

Q: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가요?

A: 맞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넓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촌락 지역에서 기껏해야 지역 신문이나 간단히 소개될만한 그들의 활동에 유력 기업들이 그들의 자금을 위탁하기는 힘듭니다. 아직 잘라 말하기는 힘든 현상이지만, 유력 기업들의 CSR 활동은 마케팅 효과나 신규 투자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의 단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그러나 기업의 입장을 볼 때 그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A: 그 말도 맞습니다. 어쩌면 CSR의 법제화가 기업이 CSR을 자선의 영역을 비용의 개념으로 전도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업이 CSR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해석하여 법제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효된 시행령들을 포함하여 이번 법안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역 기반 NGO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도 결국 기업이 그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CSR 책정 금액 중 최대 5%를 NGO에 위탁할 수 있으니 곧 기업의 한해 순이익의 0.01%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많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 곳 케랄라 지역의 경우 애초에 지역 기반 NGO들이 인근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 그럼 케랄라 지역의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CSR를 주로 수행하나요?
- A: 앞서 말했듯 케랄라는 자생적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래 주정부의 세입을 주로 중동 국가들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송금액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NGO 단체들의 활동 자본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보다는 외부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 Q: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당장 시급한 보완책이 무엇인가요?
- A: 물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기업들의 CSR 참여가 기대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힘든 선택일수는 있지만, 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완책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NGO가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넓혀야 합니다. 현행 CSR 법정 금액의 5%는 앞서 이야기하였듯, 너무 적습니다. CSR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은 NGO 단체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금전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Q: 이 곳 대학에 위치한 CSR 단체도 실질적으로 CSR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 A: 맞습니다. 일반 자선 기관처럼 기업들의 기부나 위탁 금액을 받아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년부터는 고등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CSR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전인도경제인연합에서 매 분기 열리는 CSR에 대한 교육과, 활동 점검에 대한 활동도 저와 이 곳 Rajagiri 대학에서 늘 도와주고 있습니다.
- Q: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A: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 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 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 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제어 : 인도, 인도 회사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의무화, 미소금융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

Kim, Bong-chul* · Park, Jong-ho**

The new system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the Indian Companies Act became overnight sensation to the worldwide. However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which are analyzing a purpose of it under the context of Indian societies. This paper examines the circumstance whether the CSR activities is functioning well or not. And verifying problems regarding it and suggesting supportive measures are a target of this paper.

Though Indian government already established CSR legislation, they did not stipulate the penalty clause. And that became why corporations were poorly perform on CSR activities in first year of enforcement. Furthermore, There is a proclivity that corporations lack an understanding for which activities could be recognized into the CSR. And they excused that they had no time for themselves to adjust an abruptly changing business landscape. With all, unlike rosy expectations, corporations only showed little interests to the area where the investment or attentions from the media are expected.

Fortunately, incumbent legislative is fully aware of it and exploit their best resources to various social fields. Despite the doubts that they originally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introduce the penalty clause, they are handling problems in ways that corporations can be invited in public programs. They also need to request the service sectors to take a leading role of it, which could provide the financial, or telecommunication service to the people in rural province.

* Associat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Researcher, Asia Exchange Association, M.A Candida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us, the fact that there was a substantial rise in terms of the amount of CSR expenses in 2015 provides a supporting evidence to the endeavors of the government. In doing so, we could finally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wo-fold goals shown in this paper; maturing settlement of this legislation and development of Indian society.

Key Words : India, Indian Companies 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Legislation, Micro-Finance